

#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06· 8· 14 조례 제 626호  
 개정 2007· 10· 16 조례 제 679호  
 개정 2009· 12· 10 조례 제 814호  
 (제명개정 포함)  
 일부개정 2019· 5· 8 조례 제1495호  
 일부개정 2022· 9· 30 조례 제1857호  
 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 
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 
 일부개정조례)  
 일부개정 2023· 5· 12 조례 제193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· 12· 10]

**제2조(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)**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9· 12· 10, 2019· 5· 8>

**제3조(의원의 의무)**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품위유지)**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청렴의무)**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,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조(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)**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

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9·5·8>

[제목개정 2019·5·8]

**제7조(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)**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8조(기밀의 누설금지)**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(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)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9조(사례금)** 의원은 강연, 출판물에 대한 기고,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겸직금지)** 의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7·10·16, 2022·9·30>

**제11조(겸직신고)**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·5·8, 2022·9·30>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-1호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19·5·8>

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·5·8>

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·5·8>

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

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9·5·8>

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·5·12>

[본조신설 2009·12·10]

**제12조(영리행위의 제한)** 의원은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9·12·10]

**제13조(회피 의무)**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,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·12·10]

**제14조(재산신고)** 의원은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·12·10]

**제15조(기부행위의 금지 등)** ① 의원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·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.

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,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·12·10]

**제16조(회의 출석)** ① 의원은 청가서,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

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아니 된다.

[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·12·10]

**제17조(징계 등)**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.

〈개정 2023·5·12〉

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2. 겸직을 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4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
5.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
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
7. 품위유지, 청렴의무, 회피의무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그 밖의 위반 행위

[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·12·10]

[전문개정 2019·5·8]

**제18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** ① 의원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,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·5·8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7·10·16 조례 제67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·12·10 조례 제8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9·5·8 조례 제14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5·12 조례 제19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9. 5. 8>

##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

(제2조 관련)

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,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·봉사함은 물론,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,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 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.

- I.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I.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.
- I.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.
- I. 우리는 공·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I.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함은 물론 이천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- I.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.

[별표 2] <개정 2023·5·12>

**징 계 기 준**  
(제17조 관련)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 기준
1. 품위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음주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허취소</li> <li>- 면허정지</li> </ul> </li> <li>○ 범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고 미만 확정판결</li> </ul> </li> <li>○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</li> <li>○ 성폭력, 성희롱</li> </ul>	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 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
2. 청렴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탈세</li> <li>○ 면탈</li> <li>○ 금품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</li> </ul> </li> <li>○ 인사청탁,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</li> </ul>	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, 제명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
3. 겸직금지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겸직 허위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신고, 허위신고</li> </ul> </li> <li>○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</li> </ul>	<p>경고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
4. 회피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</li> <li>○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</li> </ul>	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
5. 영리거래 금지 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리거래금지 위반</li> <li>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신고, 허위신고</li> </ul> </li> <li>○ 계약체결 제한 위반</li> <li>○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</li> </ul>	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
5.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</li> <li>○ 업무추진비 등</li> </ul>	<p>공개사과</p>
6. 그 밖의 위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유물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 위반</li> <li>○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</li> <li>○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</li> <li>○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</li> <li>○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</li> <li>○ 사적 노무 요구, 국내외 활동제한, 알선·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</li> </ul>	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</p> <p>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</p>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2. 9. 30>

연번	1	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				
<b>이천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</b> (제11조제2항 관련)						
소속정당			선 거 구 분	지 역 구		
성 명	한 글			비례대표		
	한 자		생년월일			
겸 직 내 용	기관·단체명					
	직 위		기간	~		
	수행업무내역					
	분 야	농수산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공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	영리성 여부	영리 <input type="checkbox"/> , 비영리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	보수수령 여부	보수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, 보수 미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	보수 수령액 (연간)	근로소득				원
		근로소득 이외 소득				원
계					원	
주 소				전화번호		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 및 「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(변경) 사항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(인) 이천시의회의회장 귀하						



[별지 제1-1호서식] <개정 2022. 9. 30>

##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

(제11조제2항 관련)

	소속정당		선 거 구 분	지 역 구	
성 명	한 글			비례대표	
	한 자		생년월일		
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 및 「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이천시의회의원

(인)

이천시의회의장 귀하

